

충남대학교 대학원 해양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3.2.22.]

개정 2015.3.12.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해양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제출자격)

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271호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.

② 학과에서는 다음의 각 호를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석사과정(이수)

물리해양학특론, 화학해양학특론, 생물해양학특론, 지질해양학특론 중 3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.

2. 박사과정(이수)

지역물리해양학, 지역화학해양학, 지역생물해양학, 지역지질해양학 중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.

제4조(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)

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.

1. 석사과정

시험과목은 총 3과목으로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(제3조 2항의 지정된 과목 중 이수한 3과목)

2. 박사과정

시험과목은 총 3과목으로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(제3조 2항의 지정된 과목 중 이수한 2과목, 전공선택 1과목)

② 자격시험에 불합격시 재응시 하여야 한다.

③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조(논문제출자격 외국어능력 기준)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접수 이전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석사과정 TOEIC 600점 이상
박사과정 TOEIC 700점 이상
단, 모의토익은 제외한다.

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6조(논문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)

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.

1. 석사과정 : 학진등재(후보) 국내학술지 1편
2. 박사과정 : SCI 또는 SCI-E급 1편
3. 주 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.

② 논문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본 심사 전까지 별쇄본 또는 학술지 게재 승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논문제출자격을 인정한다.

제7조(논문지도위원회) ① 논문지도위원회는 논문 발표 한 학기 이전까지 구성해야한다. (개정 2015.3.12.)

② 논문지도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,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 (개정 2015.3.12.)

제8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 3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논문지도위원회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이전 해양학과 내규에 따른다.

[별표 1]

자격시험과목

석사학위과정	박사학위과정
물리해양학특론	지역물리해양학
화학해양학특론	지역화학해양학
생물해양학특론	지역생물해양학
지질해양학특론	지역지질해양학
	전공선택과목